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-61호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,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, 교육·홍보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, 구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법규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나. 특히 어린이집, 유치원, 경로당,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시설,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, 시설 특성에 맞는 상시적·체계적 감염관리가 필요함.

다. 이에 구청장과 의료인등의 책무, 구민의 권리와 협조,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, 감염병 신고·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원, 감염취약시설의 실태조사, 방역물품 지원, 자체 감염관리

담당자 지정 등의 근거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, 구민의 권리와 협조를 규정 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)

다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라. 감염취약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도, 경비 지원, 자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양성, 방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)

마. 감염병의 신고 및 독려, 역학조사,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규정함 (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)

바. 방역소독의 권고 및 지원, 협력체계 구축,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 (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)

3. 입법예고기간: 2026. 11. 11. ~ 2026. 11. 17.(7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11월 17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(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(전화: 2147-3662, FAX: 2147-3956, e-mail: khjjj@songpa.g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,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(www.council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